

#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0
----------	-----

제출년월일 : 2000. 9.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 원스톱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전담기구인 허가민원과와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과 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 시 본청 국조정, 담당관·과 재편제, 분장사무 조정등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도모코자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함.

주요골자

- 가. 직속기관, 자치홍보담당관 및 문화체육담당관 업무조정에 따른 기획실 재 편제 및 분장사무조정(안 제7조).
- 나. 인·허가 전담기구인 허가민원과 설치와 주택과·건축과 등·폐합에 따른 도시계획국 재편제(안 제9조).
- 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행정지원국 재편제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11조).

라. 기업지원센터의 명칭이 중소기업관련 중앙부처 기관 명칭과 동일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업지원사업소로 변경(안 제 5장제1절, 제18조, 제19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사전예고사항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 자치 13101-10895('2000. 7. 5)호 공문

○ 경기도 기획 12200-10921('2000. 7.24)호 공문

#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기업지원센터”를 “기업지원사업소”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을 둔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자치홍보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을 둔다.

②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예산편성 및 증기지방재정운영
3. 투·융자사업 및 주요투자사업 심사, 분석
4. 조례·규칙의 심사 및 소송업무
5. 시정홍보의 종합기획 및 운영
6.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
8. 청소년 업무
9. 행정전산화추진 및 전산개발·유지관리
10.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계정보 자료조사, 관리

제8조의 본문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경제복지국에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 농어촌진흥과, 사회여성과, 위생과를 둔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 허가민원과, 건축과, 지적과를 둔다.

②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이용계획, 산업입지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
2.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3.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업무
4. 개발제한구역관리
5.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6.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7. 건축물 건축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8. 토지이용 및 지적도정리, 공시지가 산정
9.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제10조의 본문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환경건설국에 환경보호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시설관리과를 둔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시세과, 도세과, 재무과를 둔다.

②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공인, 복무,의전
2. 지역상황·여론관리, 시책업무추진, 선거 및 국민투표, 학교교육 지원
3. 공무원인사, 공무원 교육훈련, 조직관리, 비정규 인력관리
4. 민방위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5. 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6. 동행정의 지도·감독, 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
7.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8. 민원, 호적, 병무에 관한 사항
9.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10. 지출, 계약,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제1절의 제목 “기업지원센터”를 “기업지원사업소”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중 “기업지원센터”를 “기업지원사업소”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515번지”를 “527-5번지”로 한다.

제3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복지회관은 안산시 고잔동 525번지에 둔다.

제38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복지환경국장”을 삭제 한다.

②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중 “기업지원센터소장”을 “기업지원사업소장”으로 한다.

③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기업지원센터소장”을 “기업지원사업소장”으로 한다

④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⑤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산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

⑥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업지원센터소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통상협력팀장”을 “연구평가팀장”으로 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권혁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인사담당 박미라
	담당자 성명·전화	전덕주 (행정 3111)

# 신·구조문 대비표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p>제1조 (생략)</p> <p>제2조 (소속기관) ①~②(생략)</p> <p>③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인 안산시 기업지원센터,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안산시 환경사업소, 안산시 관산도서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시 청소사업소, 안산시 여성복지회관, 안산시 교통종합민원실, 안산시 도시개발사업소, 안산시 올림픽기념관, 안산시 농업기술보급소를 둔다.</p> <p>④(생략)</p> <p>제3조 ~ 제4조 (생략)</p>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 (소속기관) ①~②(현행과 같음)</p> <p>③_____기업지원 사업소_____</p> <p>_____</p> <p>_____</p> <p>④(현행과 같음)</p> <p>제3조 ~ 제4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시 본청</p> <p>제5조 (부시장) ①~②(생략)</p> <p>③&lt;신설&gt;</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시 본청</p> <p>제5조 (부시장) ①~②(현행과 같음)</p> <p>③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을 둔다.</p> <p>제6조 (현행과 같음)</p>

제7조 (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 운영
3. 투·융자사업 및 주요투자사업 심사, 분석
4. 조례·규칙의 심사 및 소송업무
5. 시행정의 감사 및 복무감찰
6.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7.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업무
9. 행정전산화 추진 및 전산개발·유지관리
10.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계정보 자료조사, 관리

제8조 (경제복지국) <신설>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제9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이용계획, 산업입지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
2.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3.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업무
4. 개발제한구역, 옥외광고물 관리
5. 주택, 건축허가 관리
6. 도시설계, 건축물 건축허가 관리
7. 토지이용 및 지적도 정리, 공시지가 산정

제7조 (기획실) ① 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자치홍보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을 둔다.

②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 운영
3. 투·융자사업 및 주요투자사업 심사, 분석
4. 조례·규칙의 심사 및 소송업무
5. 시정홍보의 종합기획 및 운영
6.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
8. 청소년 업무
9. 행정전산화 추진 및 전산개발·유지관리
10.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계정보 자료조사, 관리

제8조 (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 농어촌진흥과, 사회여성과, 위생과를 둔다.

② \_\_\_\_\_.

1. ~ 16. (현행과 같음)

제9조 (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 허가민원과, 건축과, 지적과를 둔다.

②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이용계획, 산업입지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
2.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3.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업무
4. 개발제한구역 관리
5.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6.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7. 건축물 건축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8. 토지이용계획 확인위,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제10조 (환경건설국) <신설>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제11조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공인, 복무, 의전

2. 동 행정의 지도·감독, 행정구역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 학교교육 지원

3. 공무원인사, 공무원 교육훈련, 조직관리, 비정규인력관리, 주민자치 센터 업무총괄

4.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5. 민방위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6. 민원, 호적, 병무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8. 지출, 계약,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 ~ 제14조 (생략)

8. 토지이용 및 지적도 정리, 공시지가 산정

9. 토지이용계획 확인위,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제10조 (환경건설국) ① 환경건설국에 환경보호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시설관리과를 둔다.

② \_\_\_\_\_

1. ~ 11. (현행과 같음)

제11조 (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시세과, 도세과, 재무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공인, 복무, 의전

2. 지역상황·여론관리, 시책업무추진, 선거 및 국민투표, 학교교육 지원

3. 공무원인사, 공무원 교육훈련, 조직관리, 비정규인력관리

4. 민방위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5. 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6. 동행정의 지도·감독,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

7.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8. 민원, 호적, 병무에 관한 사항

9.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10. 지출, 계약,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현	기 (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출 장 소</b></p> <p>제15조 ~ 제1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사 업 소</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절 기업지원센터</b></p> <p>제18조(설치)①관내 기업체의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기업 지원센터(이하 이절에서 "기업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기업지원센터는 안산시 원시동 773-2번지에 둔다.</p> <p>제19조(소장)①기업지원센터에 소장을 둔다.          ②(생략)</p> <p>제20조(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절 상수도사업소</b></p> <p>제21조 ~ 제23조(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절 환경사업소</b></p> <p>제24조 ~ 제26조(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출 장 소</b></p> <p>제15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사 업 소</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절 기업지원사업소</b></p> <p>제18조(설치)①_____기업 지원사업소(_____기업지원사업소_____).          ②기업지원사업소_____.</p> <p>제19조(소장)①기업지원사업소_____.          ②(현행과 같음)</p> <p>제20조(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절 상수도사업소</b></p> <p>제21조 ~ 제23조(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절 환경사업소</b></p> <p>제24조 ~ 제26조(현행과 같음)</p>

제4절 관산도서관

제27조 ~ 제30조(생략)

제5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31조 ~ 제33조(생략)

제6절 청소사업소

제34조(설치)①(생략)

②사업소는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에 둔다.

제35조 ~ 제36조(생략)

제7절 여성복지회관

제37조(설치) 여성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및 일반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여성복지회관(이하 이 절에서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제38조(명칭)복지회관의 구분, 명칭,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구분	명칭	소재지
본관	안산시여성복지회관	안산시 고잔동 525번지
분관	안산시여성복지회관 분관	안산시 원곡동 643-7번지

제39조 ~ 제40조(생략)

제4절 관산도서관

제27조 ~ 제30조(현행과 같음)

제5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31조 ~ 제33조(현행과 같음)

제6절 청소사업소

제34조(설치)①(현행과 같음)

②\_\_\_\_\_ 527-5번지\_\_\_\_\_.

제35조 ~ 제36조(현행과 같음)

제7절 여성복지회관

제37조(설치)①\_\_\_\_\_

②복지회관은 안산시 고잔동 525번지에 둔다.

제38조(명칭)<삭제>

제39조 ~ 제40조(현행과 같음)

연	
<b>제8절 교통종합민원실</b> 제41조 ~ 제43조(생략)	<b>제8절 교통종합민원실</b> 제41조 ~ 제43조(현행과 같음)
<b>제9절 도시개발사업소</b> 제44조 ~ 제46조(생략)	<b>제9절 도시개발사업소</b> 제44조 ~ 제46조(현행과 같음)
<b>제10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b> 제47조 ~ 제49조(생략)	<b>제10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b> 제47조 ~ 제49조(현행과 같음)
<b>제11절 농업기술보급소</b> 제50조 ~ 제52조(생략)	<b>제11절 농업기술보급소</b> 제50조 ~ 제52조(현행과 같음)
<b>제6장 동</b> 제53조 ~ 제55조(생략)	<b>제6장 동</b> 제53조 ~ 제55조(현행과 같음)

##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00
----------	-----

제안년월일 : 2000. 9. 25.

제안자 : 의회행정위원장의외5인

### 1. 수정이유

- 사업소 명칭 중 다소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안 제2조 제3항 중 “기업지원사업소”를 “기업지원센터”로 수정함.
- 안 제5장 제1절의 제목 “기업지원사업소”를 “기업지원센터”를 수정함.
- 안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지원사업소”를 “기업지원센터”로 수정함.
- 안 제19조 제1항 중 “기업지원사업소”를 “기업지원센터”로 수정함.
- 부칙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업지원사업소장”을 “기업지원센터소장”으로 수정함.

##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업지원사업소”를 “기업지원센터”로 한다.

제5장 제1절의 제목 “기업지원사업소”를 “기업지원센터”로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지원사업소”를 “기업지원센터”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기업지원사업소”를 “기업지원센터”로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업지원사업소장”을 “기업지원센터소장”으로 한다.

##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소속기관)①~②(생략)</p> <p>③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인 <u>안산시 기업지원사업소</u>,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안산시 환경사업소, 안산시 관산도서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시 청소사업소, 안산시 여성복지회관, 안산시 교통종합민원실, 안산시 도시개발사업소, 안산시 올림픽기념관, 안산시 농업기술보급소를 둔다.</p> <p>④(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사업소</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u>기업지원사업소</u></p> <p>제18조(설치)①관내 기업체의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u>기업지원사업소</u>(이하 이절에서 "<u>기업지원사업소</u>"라 한다)를 둔다.</p> <p>②<u>기업지원사업소</u>는 안산시 원시동 773-2번지에 둔다.</p> <p>제19조(소장)①<u>기업지원사업소</u>에 소장을 둔다.</p> <p>②(생략)</p>	<p>제2조(소속기관)①~②(원안과 같음)</p> <p>③..... .....<u>기업지원센터</u>..... ..... ..... ..... ..... .....</p> <p>④(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사업소</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u>기업지원센터</u></p> <p>제18조(설치)①..... .....<u>기업지원센터</u>..... ....."<u>기업지원센터</u>"..... ..... ②<u>기업지원센터</u>..... .....</p> <p>제19조(소장)①<u>기업지원센터</u>..... ..... ②(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생략) ②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및 제20조 제1항 제1호중 “기업지원센터소장”을 “<u>기업지원사업소장</u>”으로 한다. ③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기업지원센터소장”을 “<u>기업지원사업소장</u>”으로 한다.  ④~⑥(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원안과 같음) ②..... ..... .....“<u>기업지원센터소장</u>”..... ③..... ..... .....“<u>기업지원센터소장</u>”으로 한다.  ④~⑥(원안과 같음)</p>